|  |  |  |
| --- | --- | --- |
|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 (2013년 버전) 공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2013]4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위원회) 및 각 직속기구 :  투자체제 개혁 및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정부 조직을 간소화하고 권한 이양에 박차를 가하며 정부의 투자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주체 지위를 확립하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보다 충분히 발휘하고 거시적 통제를 강화∙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13년 버전) 》을 공포하는바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기업이 본 목록에 열거된 고정자산 투자프로젝트를 투자∙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 허가기관에 허가신청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투자∙건설 프로젝트는 신고(备案)제를 시행한다. 사업기관, 사회단체 등이 투자∙건설하는 프로젝트도 본 목록을 적용 받는다. 2.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가 제정한 발전계획, 산업정책, 총량통제목표, 기술정책, 진입조건, 부지사용정책, 환경보호정책, 신용∙대출정책은 프로젝트 초기단계 기업 업무 추진의 중요한 근거이자, 프로젝트 허가기관 및 국토자원, 환경보호, 도시∙농촌계획, 업종관리 등 정부기관과 금융기구가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근거이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정부는 《심각한 생산과잉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의 요구에 따라 철강,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판 유리, 선박 등 생산과잉 업종 프로젝트의 신규 생산능력 확대를 엄격히 통제한다.   1. 프로젝트 허가기관은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허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프로젝트를 허가심사함에 있어 규정된 권한, 절차 및 기간 등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들은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관리방법을 개선하며 법에 의거하여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프로젝트 허가 및 신고에 있어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주관부서는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기구 또한 신용∙대출 지원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규정에 따라 국무원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국무원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와 국무원 투자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사전에 반드시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각 급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구분 및 확정할 수 있다. 단,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고 규정된 프로젝트는 그 허가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하지 못한다. 3.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전문규정이 정해져 있거나 국가에서 별도의 전문규정을 정하였을 경우, 그 전문규정에 따른다. 4. 본 목록은 공포일 부터 시행하며, 《정부 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2004년 버전)》은 즉시 폐지한다.   　　　　　　　　　　　　　　　　　　　　　　　　　 국무원  　　　　　　　　　　　　　　　　　　　　　　　2013년 12월 2일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  **(2013년 버전)**   1. **농업수리**  * 농업 : 황무지 개간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저수지 : 국제하류(두개 이상의 국가를 걸친 강)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하류위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기타 수리공사 : 국제하류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수자원 배치조정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 프로젝트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1. **에너지**  * 수력발전소 : 주요 하류위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양수발전소 :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 * 화력발전소 : 분포식 가스 발전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하고 그 외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 열발전소 : 배압식 석탄열발전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하고, 기타 석탄열발전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며, 그 외 열발전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풍력발전소 :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원자력 발전소 : 국무원에서 허가한다. * 송전망 공사 :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400KV 이상의 직류 프로젝트와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500KV, 750KV, 1,000KV 교류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치지 않은 ±400KV 이상의 직류 프로젝트와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치지 않은 750KV, 1,000KV 교류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며; 그 외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석탄광 : 국가 계획광산구역내의 연간생산능력 120만톤 이상 규모의 신규 추가 석탄개발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고, 국가 계획광산구역내에 기타 석탄개발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하며, 기타 일반 석탄개발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국가에서 신규 건설을 금지하는 석탄⬝가스 돌출 석탄광, 가스함량도가 높은 석탄광 및 중소형 석탄광 개발 프로젝트는 허가를 금지한다. * 석탄가공연료 : 연간 생산량이 20억M3를 초과하는 합성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연간 생산량이 100만톤을 초과하는 석탄액화연료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 원유 : 원유개발 프로젝트는 석유 채굴권을 보유한 기업이 자체로 결정하되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 신고(备案)하여야 한다. * 천연가스 :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천연가스 채굴권을 보유한 기업이 자체로 결정하되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 신고(备案)하여야 한다. * LPG 접수 및 저장시설 (유전⬝가스전 및 정유소의 보조시설 프로젝트는 포함하지 않음) :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수입LNG 접수 및 저장⬝운송시설 :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 * 송유관 (유전 집체수송망 포함하지 않음) :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간선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가스수송관 (유전⬝가스전 집체수송망 포함하지 않음) : 국경 또는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간선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정유 : 정유시설 신설 프로젝트 및 일차 정유시설 증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 변성연료 에탄올 :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1. **교통운수**  * 신규건설(증설 포함) 철도 :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프로젝트 및 국가 철도망 간선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국가철도망 기타 프로젝트는 중국철도총공사가 자체로 결정하되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방 철도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허가한다. * 도로 : 국가 고속도로망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국가 고속도로망 이외의 간선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하며, 지방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허가한다. 기타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독립 도로교량, 터널 : 국경, 중요한 해만, 큰 강과 하천(3급 및 3급 이상의 항로구간)을 걸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석탄,광석,석유,가스 전용 정박장 : 연해지역(장강 남경 이하)에 신규건설하는 항구 프로젝트와 연 수용능력이 1,000만톤 이상인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컨테이너 전용 부두 : 연해지역(장강 남경 이하)에 신규건설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국내 수상 운수 : 천톤급 이상의 통항 건축물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그 외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민간항공 : 공항 신설 프로젝트는 국무원에서 허가하고, 군민 겸용 공항 증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와 군부대 관련부서가 협의하여 허가한다.  1. **정보산업**  * 통신 : 국제 통신 기초시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국내 간선 송신망(라디오⬝TV방송 송신망 포함) 및 정보안전과 관련된 기타 통신 기초시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  1. **원자재**  * 희토, 철광, 유색광물 개발 : 자원 매장량 5,000만톤 이상 규모가 확인된 철광 개발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희토광 개발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며, 기타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철강 : 생산능력을 신규 확대하는 제철, 제강, 열간압연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 유색금속 :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전해 알루미늄 프로젝트와 신규 건설하는 산화 알루미늄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 석유화학 : 신규 건설하는 에틸렌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 화학공업 : 연간 생산량 50만톤 이상인 DMTO(석탄에서 메탄올을 거쳐 올레핀을 생산) 프로젝트, 연간 생산량 100만톤 이상인 Coal to methanol(석탄에서 메탄올 생산) 프로젝트 및 신규 건설하는 PX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신규 건설하는 MDI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 * 화학비료 : 칼리비료 및 인산비료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시멘트 :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희토 : 제련 분리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하고, 희토 심가공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황금 : 채광, 선광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1. **기계제조**  * 자동차 : 국무원이 승인한 《자동차산업발전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 선박 : 10만톤급 이상의 선박제조시설(조선대, 도크)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1. **경공업**  * 연초 : 권연(卷烟), 담배용 초산섬유소 및 토우(tow) 프로젝트는 국무원 산업관리부서에서 허가한다.  1. **첨단기술**  * 민용항공⬝우주비행 : 민용비행기(헬리곱터 포함) 제조 프로젝트, 민용위성 제조 프로젝트 및 민용 원격탐지위성 지상국 건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1. **도시건설**  * 도시고속궤도교통 프로젝트 : 성급 지방정부에서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허가한다. * 도시 상수도: 두개 이상의 성(구,시)을 걸친 일간 수송량 50만톤 이상인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 도시 도로교량⬝터널 : 중요한 해만 또는 큰 강과 하천(3급 및 3급 이상의 항로구간)을 걸친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 기타 도시건설 프로젝트 :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1. **사회사업**  * 테마파크 : 특대형 프로젝트는 국무원에서 허가하고, 대형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하며, 중소형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관광 : 국가급 풍경 명승지, 국가자연보호구, 전국 중점문물보호구역 내 총투자 5,000만 위안 이상의 관광개발과 자원보호 프로젝트,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총투자 3,000만 위안 이상의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기타 사회사업 프로젝트 : 국무원의 명확한 규정에 의해 신고제로 전환된 프로젝트 이외의 기타 프로젝트는 그 종속관계 별로 국무원 산업관리부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허가제 또는 신고제 시행을 확정한다.  1. **금융**  * 화폐 인쇄, 화폐 제조, 은행권용지 프로젝트 : 중국인민은행에서 허가한다.  1. **외국인투자**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중국측 대주주(상대적 대주주 포함) 지위 확보를 요구하는 총투자(증자 포함) 3억불 이상의 권장류 프로젝트, 총투자(증자 포함) 5,000만불 이상의 제한류 프로젝트(부동산 포함하지 않음)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제한류 프로젝트 중 부동산 프로젝트 및 총투자(증자 포함) 5,000만불 미만의 기타 제한류 프로젝트는 성급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 상술한 프로젝트 이외의 본 목록 제1조~제11조에 열거된 프로젝트는 본 목록 제1조~제11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허가한다. *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사항은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상무부 및 지방정부에서 허가한다.  1. **해외투자**  * 중국측 투자금액이 10억불 이상인 프로젝트, 민감한 국가⬝지역 또는 민감한 산업에 연관된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 상술한 프로젝트 이외의, 중앙관리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지방기업이 투자하는 3억불 이상 투자규모의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신고한다. *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여 기업(금융기업 제외) 창설과 관련하여 민감한 국가⬝지역 또는 민감한 산업에 연관된 경우 상무부에서 허가하며, 기타의 경우 중앙관리기업은 상무부에 신고하고 지방기업은 성급 지방정부에 신고한다. |  | **国务院关于发布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3年本）的通知**  国发〔2013〕47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为进一步深化投资体制改革和行政审批制度改革，加大简政放权力度，切实转变政府投资管理职能，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确立企业投资主体地位，更好发挥政府作用，加强和改进宏观调控，现发布《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3年本）》，并就有关事项通知如下：  一、企业投资建设本目录内的固定资产投资项目，须按照规定报送有关项目核准机关核准。企业投资建设本目录外的项目，实行备案管理。事业单位、社会团体等投资建设的项目，按照本目录执行。  二、法律、行政法规和国家制定的发展规划、产业政策、总量控制目标、技术政策、准入标准、用地政策、环保政策、信贷政策等是企业开展项目前期工作的重要依据，是项目核准机关和国土资源、环境保护、城乡规划、行业管理等部门以及金融机构对项目进行审查的依据。  对于钢铁、电解铝、水泥、平板玻璃、船舶等产能严重过剩行业的项目，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政府要按照国务院关于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指导意见的要求，严格控制新增产能。  三、项目核准机关要改进完善管理办法，提高工作效能，认真履行核准职责，严格按照规定权限、程序和时限等要求进行审查。有关部门要密切配合，按照职责分工，相应改进管理办法，依法加强对投资活动的监管。对不符合法律法规规定以及未按规定权限和程序核准或者备案的项目，有关部门不得办理相关手续，金融机构不得提供信贷支持。  四、按照规定由国务院核准的项目，由发展改革委审核后报国务院核准。核报国务院核准的项目、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的项目，事前必须征求国务院行业管理部门的意见。由地方政府核准的项目，省级政府可以根据本地实际情况具体划分地方各级政府的核准权限。由省级政府核准的项目，核准权限不得下放。  五、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专门规定的，按照有关规定执行。  六、本目录自发布之日起执行，《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04年本）》即行废止。  　　　　　　　　　　　　　　　　　　　　　　　　 国务院　　　　　　　　　　　　　　2013年12月2日  **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  **（2013年本）**  　　一、农业水利  　　农业：涉及开荒的项目由省级政府核准。  　　水库：在跨界河流、跨省（区、市）河流上建设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其他水事工程：涉及跨界河流、跨省（区、市）水资源配置调整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二、能源  　　水电站：在主要河流上建设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抽水蓄能电站：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  　　火电站：分布式燃气发电项目由省级政府核准，其余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热电站：燃煤背压热电项目由省级政府核准，其余燃煤热电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热电项目由地方政府核准。  　　风电站：由地方政府核准。  　　核电站：由国务院核准。  　　电网工程：跨境、跨省（区、市）±400千伏及以上直流项目，跨境、跨省（区、市）500千伏、750千伏、1000千伏交流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非跨境、跨省（区、市）±400千伏及以上直流项目，非跨境、跨省（区、市）750千伏、1000千伏交流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煤矿：国家规划矿区内新增年生产能力120万吨及以上煤炭开发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国家规划矿区内的其余煤炭开发项目由省级政府核准；其余一般煤炭开发项目由地方政府核准。国家规定禁止新建的煤与瓦斯突出、高瓦斯和中小型煤炭开发项目，不得核准。  　　煤制燃料：年产超过20亿立方米的煤制天然气项目，年产超过100万吨的煤制油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原油：油田开发项目由具有石油开采权的企业自行决定，报国务院行业管理部门备案。  　　天然气：气田开发项目由具有天然气开采权的企业自行决定，报国务院行业管理部门备案。  　　液化石油气接收、存储设施（不含油气田、炼油厂的配套项目）：由省级政府核准。  　　进口液化天然气接收、储运设施：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  　　输油管网（不含油田集输管网）：跨境、跨省（区、市）干线管网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省级政府核准。  　　输气管网（不含油气田集输管网）：跨境、跨省（区、市）干线管网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省级政府核准。  　　炼油：新建炼油及扩建一次炼油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变性燃料乙醇：由省级政府核准。    三、交通运输  　　新建（含增建）铁路：跨省（区、市）项目和国家铁路网中的干线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国家铁路网中的其余项目由中国铁路总公司自行决定并报国务院投资主管部门备案；其余地方铁路项目由省级政府按照国家批准的规划核准。  　　公路：国家高速公路网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国家高速公路网外的干线项目由省级政府核准；地方高速公路项目由省级政府按照国家批准的规划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独立公路桥梁、隧道：跨境、跨重要海湾、跨大江大河（三级及以上通航段）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煤炭、矿石、油气专用泊位：在沿海（含长江南京及以下）新建港区和年吞吐能力1000万吨及以上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省级政府核准。  　　集装箱专用码头：在沿海（含长江南京及以下）建设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省级政府核准。  　　内河航运：千吨级及以上通航建筑物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其余项目由地方政府核准。  民航：新建机场项目由国务院核准，扩建军民合用机场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会商军队有关部门核准。  　　四、信息产业  　　电信：国际通信基础设施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国内干线传输网（含广播电视网）以及其他涉及信息安全的电信基础设施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    五、原材料  　　稀土、铁矿、有色矿山开发：已查明资源储量5000万吨及以上规模的铁矿开发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稀土矿山开发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其余项目由省级政府核准。  　　钢铁：新增生产能力的炼铁、炼钢、热轧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有色：新增生产能力的电解铝项目，新建氧化铝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石化：新建乙烯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化工：年产超过50万吨的煤经甲醇制烯烃项目，年产超过100万吨的煤制甲醇项目，新建对二甲苯（PX）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新建二苯基甲烷二异氰酸酯（MDI）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  　　化肥：钾矿肥、磷矿肥项目由省级政府核准。  　　水泥：由省级政府核准。  　　稀土：冶炼分离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稀土深加工项目由省级政府核准。  黄金：采选矿项目由省级政府核准。  　　六、机械制造  　　汽车：按照国务院批准的《汽车产业发展政策》执行。  　　船舶：新建10万吨级及以上造船设施（船台、船坞）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七、轻工  　　烟草：卷烟、烟用二醋酸纤维素及丝束项目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核准。    八、高新技术  　　民用航空航天：民用飞机（含直升机）制造、民用卫星制造、民用遥感卫星地面站建设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九、城建  　　城市快速轨道交通项目：由省级政府按照国家批准的规划核准。  　　城市供水：跨省（区、市）日调水50万吨及以上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城市道路桥梁、隧道：跨重要海湾、跨大江大河（三级及以上通航段）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其他城建项目：由地方政府核准。    十、社会事业  　　主题公园：特大型项目由国务院核准，大型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中小型项目由省级政府核准。  　　旅游：国家级风景名胜区、国家自然保护区、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区域内总投资5000万元及以上旅游开发和资源保护项目，世界自然和文化遗产保护区内总投资3000万元及以上项目，由省级政府核准。  　　其他社会事业项目：除国务院已明确改为备案管理的项目外，按照隶属关系由国务院行业管理部门、地方政府自行确定实行核准或者备案。    十一、金融  　　印钞、造币、钞票纸项目：由中国人民银行核准。  　　十二、外商投资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中有中方控股（含相对控股）要求的总投资（含增资）3亿美元及以上鼓励类项目，总投资（含增资）5000万美元及以上限制类（不含房地产）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限制类中的房地产项目和总投资（含增资）小于5000万美元的其他限制类项目，由省级政府核准。《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中有中方控股（含相对控股）要求的总投资（含增资）小于3亿美元的鼓励类项目，由地方政府核准。  　　前款规定之外的属于本目录第一至十一条所列项目，按照本目录第一至十一条的规定核准。  　　外商投资企业的设立及变更事项，按现行有关规定由商务部和地方政府核准。    十三、境外投资  　　中方投资10亿美元及以上项目，涉及敏感国家和地区、敏感行业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核准。  　　前款规定之外的中央管理企业投资项目和地方企业投资3亿美元及以上项目报国务院投资主管部门备案。  　　国内企业在境外投资开办企业（金融企业除外）事项，涉及敏感国家和地区、敏感行业的，由商务部核准；其他情形的，中央管理企业报商务部备案，地方企业报省级政府备案。 |